

제346회 임시회
2016. 3. 4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2월 24일
-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4일

3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인 『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』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인 『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』개정에 맞게 조례의 관련조항 수정
- 나. 이사로 추천 가능한 사람과 인원수를 조례에 반영 (안 제3조)
- 다. 의료원 지도·감독 조항 중 도지사의 “승인” 조항 수정 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15.7.24.)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 수정한 것으로
- 조례안의 개정 사항중 상위법 개정이 따라 반영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,

- 제3조(임원)는 임원 중 이사의 수를 “6명 이상 10명 이하” 에서 “8명 이상 12명 이하” 로 증원하였고(법 제8조), 의료원장이 이사회 의 “의장” 이 되며(법 제9조)
-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,
 - “지역 보건 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명” 을 “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 중 공공 보건 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과 지역 보건 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” 으로,
 - “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 1명” 을 “「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 법」 제2조의 비영리 민간 단체 및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” 으로 개정하였으며(법 제8조)
 - “지역 주민 대표 1명 이상” 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 성별과 각 호의 인원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음(법 제8조)
- 또한, 제10조(지도·감독)에서는 “의료원 정관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” 을 도지사의 인가로(법 제6조제2항), “사업 계획서, 예산서 및 결산서 는 도지사의 승인을(법 제16조, 제20조) 받도록 새로이 규정함.
- 따라서,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임원 중 이사로 추천 가능한 사람의 범위 및 인원수 등을 반영하고, 의료원을 지도·감독하는 조항 중 도지사의 ‘인가’ 및 ‘승인’ 조항을 수정하는 등 법리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안 제3조 제1항 임원의 규정에 있어 법 제8조에 명시된 ‘원장’ 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‘의장’ 라고 규정한 사유와
- 안 제3조 제3항의 이사 임명에 대한 규정에 있어 관련 법률 조항을 인용하지 않고 시행령을 인용한 부분, 그리고 단서 조항에서 임원 추천 위원회 추천 절차의 생략 대상은 상위법상 ‘충청북도의회 추천인’ 도

포함됨에도 불구하고, 추천절차 생략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- 또한, 개정안 제10조 제2항 제2호 “의료원의 회계에 관한 사항”을 도지사 ‘승인’ 사항으로 신설하였는데, 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“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고”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도지사 ‘보고’ 사항을 ‘승인’ 사항으로 변경(신설)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